

200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편집부>

1. 주요골자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안내기관은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농업인 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 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함으로써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 등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 조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들이 여능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에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 함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호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 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하여 심사시 지원 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에게도 지원우선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해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 처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분기별 1회이상 사업추진상황 확인 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표기

37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조규담, 사무관 최이규, 신대식)입니다

I.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부분육가공시설>

1. 목 적

- 도축 및 도소매단계의 냉장·부분육 생산·유통 활성화로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
- 육류의 유통비용 절감 및 위생적인 육류유통을 통한 안전성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도축 및 도소매 유통단계 축소 등 활성화 도모
 - 도축기능에 가공기능을 보완하므로서 유통비용 절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8까지	'99	2000예산안	2001이후	계
사업량		10개소	15	35	60
사업비	-	7,000	10,500	24,500	42,000
- 축발	-	4,900	7,350	17,150	29,400
보조	-	-	-	-	-
융자	-	4,900	7,350	17,150	29,400
- 지방비	-	-	-	-	-
- 자부담	-	2,100	3,150	7,350	12,600

5. 2000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 대상자 및 조건

- 농안법규정에 의한 축산물공판장 경영자, 축산물가공처리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도축업(소·돼지) 경영자, 식육판매업자단체 및 브랜드육 생산자로서 지육을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
- 가공능력이 1일 소 30두 또는 돼지 150두 정도 일 것

(2)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순위 : 축산물 공판장에서 기존 도축장 건물을 이용하여 부분육 가공공장 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시설을 확장 하고자 하는자
- ② 순위 :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도축장에서 가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자
- ③ 순위 : 일반도축장 경영자, 식육판매업자단체 및 브랜드육 생산자로서 자동화등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갖춘 도축장과 연계하여 부분육가공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3) 사업량 및 사업비 : 15개소, 7,35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700 백만원 (용자 490, 자담 210)
- 지원(용자) 조건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8%(생산자단체5%, 일반도축장8%)

(4) 사업내용

- 부분육 가공을 위한 절단기, 진공포장기등의 가공시설, 냉장·냉동 보관시설, 경매시설비, 전기시설·설비공사와 기존건물(창고,가공장등) 개·보수비등
 - 기존 도축장시설과 연접하여 부분육가공장을 설치하고, 도축된 지육은 세균 오염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부분육가공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지육표면 세균수는 1cm²당 10³ 이하로 유지).
- ※ 가공장건물 신축자금 및 임차료 등의 운영자금 사용 금지

나. 사업추진체계

(1) 주관 : 시·도지사

○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 : 축산물유통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2) 시행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0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계류장, 도축장 전경 및 내부시설 사진 첨부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본 사업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임을 유의하여 신청
- 농림부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3)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개요, 부분육 가공시설 계획(시설을 확장하는 경우는 당초와 개선계획 비교),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원료육 확보방안 및 부분육가공·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등

(4) 사업 시행 요령

- 사업시행자는 대상자 선정통보에 의거 사업을 추진
- 사업시행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99.9.8)에 의거 자금집행 및 증빙서류 확보
- 자금집행은 시·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에 의거 집행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
 - 사진등 증빙자료를 첨부

6. 2001년 사업시행요령 : 2000년 사업시행요령에 의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축산경영과장 김남철, 사무관 김홍식, 이재용) 입니다.

1. 목적

- 사료제조시설(남은음식물 사료화 시설 포함)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사료원료 수입자금을 지원하여 국제 사료원료 가격불안에 따른 수급안정과 사료제조업체의 경영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원료 수입자금 지원
- 자가배합사료(남은음식물사료 포함)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92-'96	'97	'98	'99	2000 (예산안)	2000-2004
사업량		38	11	7(2)	102	58	
사업비	계	58,230	65,913	73,232	58,294	49,032	
	보조	-	-	-	-	-	
	용자	54,115	62,658	67,651	53,407	49,032	
	지방비 자부담	- 4,115	220 3,035	- 5,581	- 4,887	- -	

-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 사료원료 수입자금 + 자가배합사료 제조
- ② 사업량 ()내서는 계속사업임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 지원배경

- 반추가축의 정상발육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섬유질사료는 부피가 큰 조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

○ 지원대상자

- 축협·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315백만원(지원단가는 150~450백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지원단가는 지원하는 용자금액 기준임
- 생산자단체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친환경 섬유질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1,000백만원까지 지원가능

○ 지원기준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을 타당성 검토하여 용자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 장비 및 시설비 지원

(2) 사료원료 수입자금

○ 지원배경

- 환율 및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불안정에 대응,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
- 배합사료 산업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자 : 배합사료제조업체

- 농림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를 제한할수 있음

○ 지원조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 자금을 수입사료 원료구매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함

(3) 자가 배합사료제조

○ 지원배경

- 대부분 농가에서는 배합사료공장에서 제조한 고가사료를 급여하고 있어 축산물의 경쟁력 저하
 -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비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가축의 생산비중에서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 생산·이용이 필요
 - ※ 배합사료제조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옥수수등 수입사료 원료를 '98. 4월부터 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도 공급가능토록 조정함
-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사업도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료제조시설이므로 2000년부터 자가배합사료 제조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함

○ 지원대상자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제조시설 : 315백만원(지원단가는 150~450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자가 결정)
- 제조장비 : 23백만원(지원단가는 장비의 능력에 따라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결정)

○ 지원조건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을 타당성 검토하여 용자 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제조시설 : 건물(창고포함), 기계 및 부대 시설비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제조장비 : 분쇄기, 배합기, 발효기, 교반기, 급이배관, 원료탱크, 콘베어, 원료계량 및 투입장치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건축비는 제외)

나. 2000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58	백만원 49,032	49,032	-	49,032		
○ 자가배합사료제조 (남은음식물사료포함)	52	4,457	4,457		4,457		
- 제조시설	12	3,500	3,500	-	3,500	-	
- 제조장비	40	957	957		957		
○ 섬유질사료 제조 시설	6	2,575	2,575	-	2,575	-	
○ 사료원료 수입자금	-	42,000	42,000	-	42,000	-	-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사료원료 수입자금 : 연리 8%, 1년 거치 일시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 시·도지사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섬유질사료제조시설사업, 자가배합사료 제조사업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축산(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산업)과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 립 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
 - 축협중앙회 : 사료분사
 - 한국사료협회 : 업무부

다. 사업시행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생산자단체, 협업체중 제조기술확보 및 참여농가가 많은 경우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는 자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의 효율성 여부 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를 추천

○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추천자의 사업계획서 및 시·도지사의 사업타당성 검토내용,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변경, 신축에서 개축등 주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비 지원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2) 사료원료 수입자금

○ 사업비 지원방법(사업비 배정)

① 농 립 부

- 사료협회와 축협의 최근 2년간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로 배정

② 축협중앙회

- 축협 및 계열화 업체의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③ 한국사료협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배정비율은 50:50으로 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에서의 업체별 배정은 각각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 추진일정

- 농림부장관은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2000.1.31)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월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축협중앙회장 (축산발전기금부서)에게 통보(2000.2.15)하고, 1부를 농림부에 제출
-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희망시기 및 금액을 사전 파악·조정

(3) 자가배합사료제조사업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자가배합사료 이용능력, 사업의 효율성 여부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 남은음식물사료제조를 할 경우에는 남은음식물 공급자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시·군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 1일3톤이상 남은 음식물 확보가 가능한 자

※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조합원 수, 가축사육두수)
- 사업계획(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자가배합사료 생산능력, 원료 확보방법, 자가배합사료제조방법, 사업수지 분석, 담보능력 등)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
 - 남은음식물사료제조 대상은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기 선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료확보차원에서 신규 추천을 지양할 것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 검토내용을 종합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별 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우선순위 >

- ① 원료의 자체확보 및 계약등으로 원료확보가 가능한 자
- ② 사업자 부지확보 및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자
- ③ 사업대상자중 영농조합법인·협업체를 우선 지원

○ 대상자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상황과 사업추진여건, 시·도별 가축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비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확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점검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조정, 신축에서 개축, 제조장비 및 시설의 변경등 주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에서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 기술지도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 명단을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하고 기술지도 협조요청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대상자를 통보
- 축산기술연구소는 남은음식물사료의 제조공정, 사양관리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 및 시·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시·도에서 기술지도 요청시에 현지기술지도 협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기별 기술점검 및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
 - 기술점검 및 지도결과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하고 공동 해결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도결과를 취합하여 농림부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가. 사업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장비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시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추진
- 사업계약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등으로 구분입찰할 경우에는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함

나.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농가자가배합사료제조사업중에서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시설은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하여 합동 실시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
-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

다. 보고(가26-60)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서식 1>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시·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시·도)
 - 사업대상자는 정산보고시 축발기금운영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타용도로 사용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나. 보고(가26-60)

-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자금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에게 이 규정과 관련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함
- 자금의 대출 및 상환절차 등은 축발기금 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999호, '99.9.8)에 따르되,
 - 이 규정에 의한 대출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대출 가능함.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사업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

나. 신청자격

-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영농조합법인(협업체 포함), 생산자단체, 농가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는 자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사업비 조달능력·기대효과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
- 농림부장관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라.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 립 부

나. 신청자격

- 축협중앙회(지역조합, 계열화 업체 포함)
- 한국사료협회 회원사

다. 신청절차

- 축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원료 수입자금의 계속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2000.3.31까지 목적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예산 요구액 및 산출내역, 기타 국제곡물가격 및 수급전망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축산경영과)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료관리법에 의한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
 - 용자후 1년이상 사료제조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자
-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이 축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
 - 축협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규모를 확정·통보

마.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자 신청을 할 수 있음

(3) 자가배합사료제조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시·군 경유)

나. 신청자격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협업체, 양축농가

다. 신청절차

- 2000.3.31까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희망자사업 신청(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시·군)
 - 사업대상자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상자 신청(시·도지사)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절차
 - 시·도지사는 가축의 사육규모,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능력, 자가배합용 사료 원료 구입 가능성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 상황과 사업추진 여건, 시·도별 가축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확정

5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정책과(과장 허윤진, 사무관 김영준)입니다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농·축협이 사업수익성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
 -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단계별 추진계획
 - '99년에 농·축협 각 1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 2000년에는 원예특작·축산분야에 대해 전국 확대 시행
 - 2001년 이후 전면적인 종합자금제도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2000.1.1시행)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4. 2000년도 지원계획

	'99 사업비			2000 사업비			
	계	국 고 용 자	자 담	계	국 고 용 자	농 축 협 용 자	자 담
합 계	백만원 21,400	15,000	6,400	백만원 277,143	162,000	32,000	83,143
원예특작	10,000	7,000	3,000	-	-	-	-
축 산	11,400	8,000	3,400	-	-	-	-

※ 원예특작과 축산으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 자담은 대출약정에서 사안별로 결정되므로 자담을 30%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영농규모, 연령, 영농종사기간과 관련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기준에 반영

※ 농업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1년이상)를 제출

2) 지원조건

- 원예특작·축산분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
 - ※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2000년에는 허용하지 않으나 시설·개보수자금을 종합자금으로 지원받은 후 종합자금 대출절차에 따른 대출약정을 통해 운영자금만을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가능함
- 지원조건 : 자부담비율은 대출약정에서 개별 사안별로 정함
 - 금 리 : 연리 5.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인삼 식재·시설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 자금용도 :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
 - 시설자금 : 생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등(토지매입·임차자금은 지원제외.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예시]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지원 가능)
 - ※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한우, 착유우 모두 암송아지, 육성우만 해당)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가축입식비 제외)
 - ※ 일회성 농자재로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예: 봉지, 포장상자 등 포장재, 반사필름 등)에는 운영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상한액 없음)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대출취급기관

※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2) 농업경영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대출취급기관의 소속부서(사무소) 및 대출취급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출취급 승인을 얻은 지역농협·전문농협과 지역축협·업종축협

※ 대출취급승인을 얻은 지역농협·전문농협과 지역축협·업종축협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 중앙회 및 해당 농축협에서 수시로 별도 공고하며 각사무소에는 「농업경영종합자금 취급사무소」라는 표지를 부착

3) 자금운용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과(02-503-7261)

다. 지원대상자 선정

1)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축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전문 농협 및 지역·업종 축협에 신청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사후관리·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사업대상자 선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 농·축협은 사업자 선정전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종합자금융자협의회등을 통해 시·군과 협의(다만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우선 존중해야 함)
- 선정기준
 - 농축협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인정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취급사무소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보(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협에 통보

3) 선정방법

-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 지침과 농·축협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농·축협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인허가등 행정사항 및 대상자 선정안에 대해 종합자금융자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침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협이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부·9개도 주관)
 - 2000년 예산 : 국고·지방비 20억원, 자부담 50%
-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라. 자금대출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농림부훈령 제915호) 등 정책여신관련 규정과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마.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자금 중 융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소정보화사업으로 관리되거나 종축등록을 한 경우에만 인정)
 -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발급한 매매증명서를 첨부한 한우암소도 인정
- 자부담금의 검정·정산 여부 및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농·축협중앙회장이 정함
- 운영자금은 검정 및 정산 대상에서 제외

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목적 외의 용도. 이하 같음)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농정기관(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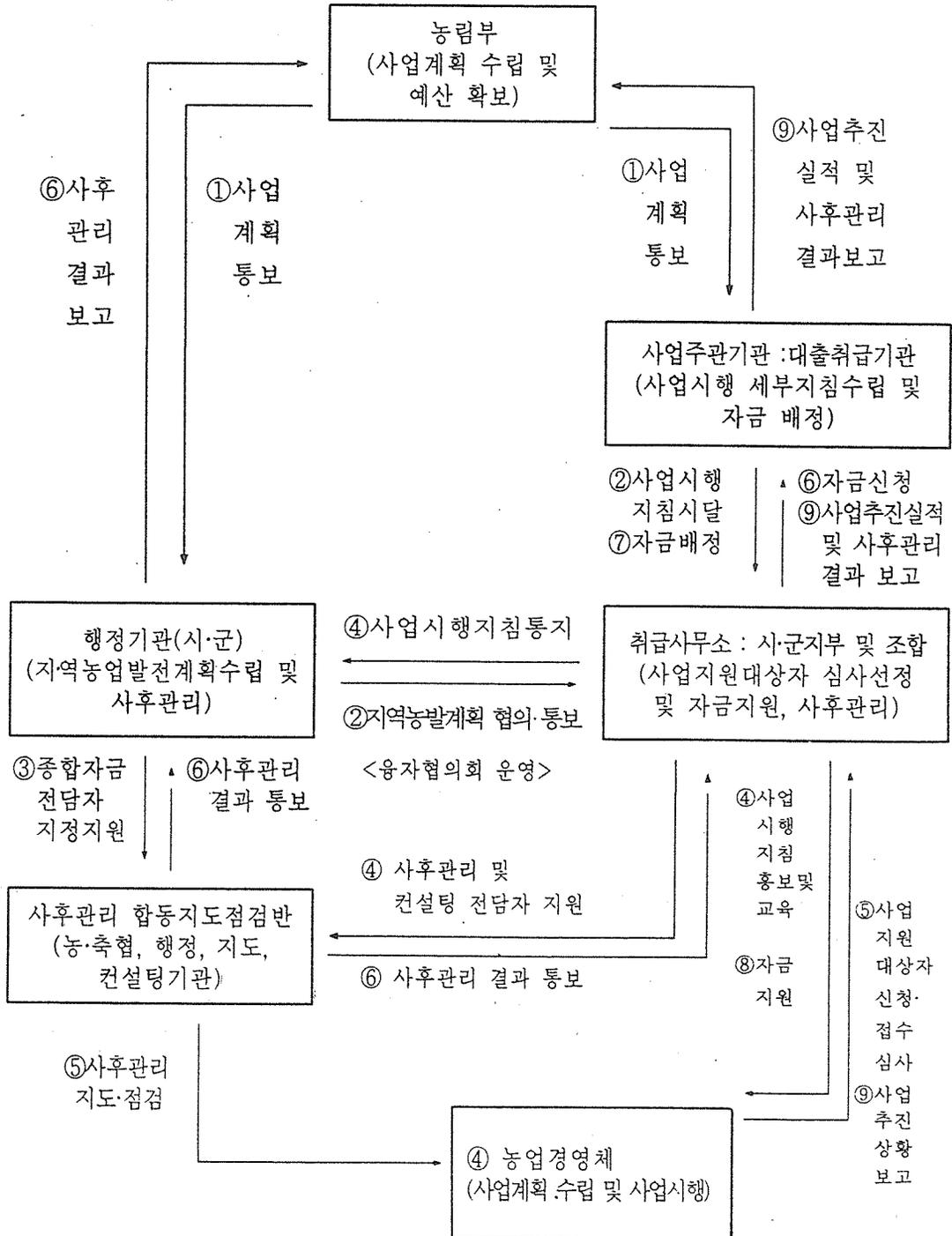
- 농·축협외 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군청 농정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농·축협은 개별 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거래 기록 등 보유정보를 활용한 일상적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연 2회 이상 영농상태 및 경영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 및 추가지원에 반영

- 회계기록 및 경영일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가지원시 우대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 합동으로 「사후관리점검반」을 구성, 반기별로 점검 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협 컨설팅 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의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추진
 - 경영기록 관련 교육·지도, 회계프로그램 보급, 사업계획수립과 관련된 조언·자문, 경영·기술진단과 처방 등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선택,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조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농·축협과 행정·지도기관간에 정기적인 정보교류 및 지역내 적정 투자수요, 투자방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협의
- 시·군은 농·축협의 사후관리업무에 협조하는 한편 농·축협의 자금 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사후관리실태를 연1회 이상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결과와 의견을 취급사무소에 통보하며 문제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보고주기별로 매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2000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2001. 3. 20까지

아. 기 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농지법·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자. 농업경영종합자금제 운영체제도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집승·가금,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우형기, 선별기,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분쇄기, 원유분석
장비, 축산분뇨처리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지원
대상 기계·장비는 제외)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시설자금 기준단가는 별표(시설기준단가)을
참고하되 지역여건등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 수질보전구역에는 축사등 사육시설의
신규지원 불가

다.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대출취급승인을 받은 지역축협 및 업종축협
- 사업담당부서
 - 농 립 부 :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
 - 지역 및 업종축협 : 종합자금담당자

< 축산분야 >

사 업 별		지 원 단 가
기 반 시 설	진입로개설	Km당 100백만원(노폭4m, 포장3m)
	목로개설	Km당 45백만원(노폭4m)
	용수개발	공당 30백만원
	전기시설	Km당 5,500천원
사 육 시 설	축 사	한우사 : 평당 420천원 유우사 : 평당 700천원 돈 사 : 평당 820천원 산란계사 : 평당 650천원 육계사 : 평당 360천원 기타가축 : 실비적용
	유기축산시설	실비 적용
	창 고	평당 300천원
	관리사	평당 300천원
	운동장비가림시설	평당 100천원
	수리, 개보수	신축비용의 80% 이내
관리용기계기구장비		실비 적용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의 구입비		전년도 전국 평균 거래가격의 50%

○ 단가기준(VAT포함)

- 세부사업별 기준단가는 예시 기준이므로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성격(무창돈사, 무창계사 등)에 따라 지역·업종축협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 조정시에는 위 단가기준을 참고하고 실제비용을 감안하되,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른 중병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함
- 대출건별 보고는 하지 않되 반기별로 업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단가조정 의견을 제출
- 이 지침에서 제시한 시설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선택 설치. 규모의 증감 및 제시한 시설 이외의 시설도 설치 가능하되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규모 및 적정단가 제시
-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

- 전력인입은 한전실비적용, 사육장비는 조달청구매단가 또는 최근 물가정보기준가격을 적용하되 실제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가격 적용 가능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이상길, 행정사무관 박상운)입니다.

1. 목 적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게 사료구입비 및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전업규모의 축산농가, 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축산 경영체에게 가축사양비, 시설개보수 등의 운영자금을 저리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강화 제고
- 축산재해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업 분야에 지원된 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품질향상 부존자원활용, 방역 및 분뇨자원화, 집유일원화 참여 등 정부시책 우수추진 축산경영체에게 인센티브 부여
- 축종별·사육규모별 지원규모의 차등화를 통하여 적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의 생산성을 유도

3.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 경위

-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82 : 축산진흥기금에서 157억원 지원 시작(대출금리 연 10%)
 - '88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 시작(차입금액 200억원)
 - '94 : 정부의 한국은행 정책자금 지원 축소 방침에 따라 재정으로 점진적 전환
 - '97 : 양축자금을 축산경영자금으로 명칭변경 및 제도개선(일반·전업으로 구분 지원)
 - '98 : 한은자금 지원 종료
 - '99 : 축산시책 우수농가에 자금지원 인센티브 부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2004	
지원규모	4,000	4,200	5,200	6,700	6,700	6,700		
재원별	재정자금 (신규)	1,416 (248)	1,724 (368)	2,382 (738)	3,095 (833)	3,095 (120)	3,095 (210)	
	한은자금	624	416	208	-	-	-	
	축협자금	1,960	2,060	2,610	3,605	3,605	3,605	

5. 지원조건 및 자금의 용도

- 용자기간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 금 리 : 5.0%
- 자금의 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기존불량시설의 개·보수비 등 가축 사육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 신규시설투자, 가축입식비 및 토지구입비는 지원제외
단, 재해대책 경영자금의 경우는 가축입식비 지원 가능

6. 사업시행요령

가. 일반경영자금

- 1) 지원대상자 : 부업규모 축산농가
-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미만
 - 닭 : 1만수 미만
 - 기타가축
 - 전업경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준·전업 축산농가

○ 지원금액

구 분	5백만원내	10백만원인
한(육)우·말	10두미만	10두이상
젖 소	20두미만	20두이상
돼 지	100두미만	100두이상
닭	7,000수미만	7,000수이상
기타가축	상기 사육두수를 감안 운용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읍·면·동 단위로 읍자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

○ 읍자협의회 구성(7인)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양축가대표 4인(후계자 1, 일반 3)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1인, 축협 1(상무 또는 전무)

○ 선정절차

- 축협조합장은 자금지원 계획을 관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축산농가에게 홍보
- 축산농가는 읍·면·동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자금신청
- 축산계장(대의원)은 “읍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순위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축협조합장에게 제출
- 축협조합장은 추천된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이나 조합게시판에 공고

< 시·군·구 단위로 읍자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

○ 읍자협의회 구성(7인)

축산계장(또는 대의원) 2, 양축가대표 3(후계자 1, 일반 2), 시·군·구 담당

공무원 1, 축협 1(전무 또는 상무)

○ 선정절차

- 축협조합장은 자금지원계획을 관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축산농가에게 홍보

- 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축협에 신청
- 축협조합장은 “유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순서, 지원액을 협의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체간행물 및 축협게시판에 공고
- ※ 축협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상기 2가지 방법중 조합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4) 우수농가 우선지원

- 유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공방단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 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볏짚이용, 남은음식물 사료화
 - 기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나. 전업경영자금

1) 지원대상자 : 전업규모의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등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아래 규모의 한(육)우, 젖소, 말,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는 개별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30두 이상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이상
 - 돼지 : 500두 이상
 - 닭 : 1만수 이상
-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종돈업체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직접 사육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
 - ※ 단,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단지의 경우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개별축산농가 : 40백만원 이내

구 분	15백만원이내	20백만원이내	30백만원이내	40백만원이내
한(육)우	30~50두미만	100두미만	200두미만	200두이상
한우번식우·말	20~50두미만	100두미만	200두미만	200두이상
젖 소	30~50두미만	100두미만	200두미만	200두이상
돼 지	500~1천두미만	1,500두미만	2,000두미만	2,000두이상
닭	1~2만수미만	3만수미만	4만수미만	4만수이상

-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축 종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한 도	2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 법인명의(축산단지 포함)로 대출을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명으로 자금 지원 불가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개별농가 >

- 축산농가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축협조합에 신청
- 축협조합장은 대출신청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통보
- 축협조합장은 대출신청서류를 토대로 축산경영자금 심사평가표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와 합동 심사(현장확인)하여 축종별로 지원순위 및 지원액 결정
- 축협조합장은 축종별 지원대상자 결정내역을 도지회, 관할 시·군, 본인에게 통보

<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 등 >

-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등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축협에 신청
- 축협조합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축산경영자금심사표에 의해 관할 시장·군수와 합동 평가후 시·도지회에 제출
- 축협도지회장은 해당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4) 우수농가 우선지원

- 축산시책(가축질병, 품질개선, 부존자원 활용, 축산분뇨자원화 등)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우수농가에게 자금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표』에 반영조치
 - 가축질병예방 : 공방단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등
 - 품 질 개 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생산, 종축등록생산, 우수축 출하, 1등급 원유생산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재배, 벼짚이용, 남은음식물사료화
 - 기 타 : 집유일원화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

5) 규격돈 출하지원 확대

- 양돈분야에 대한 전업경영자금 지원은 연차적으로 규격돈 출하지원실적에 의거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
 - ※ 세부지원기준은 별도마련 시행

다. 재해대책 경영자금

1) 지원대상자 : 축산농가중 재해를 입은 농가

2)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농어업재해대책법령 및 자연재해법령의 규정에 의해 『재해』로 판정된 경우
 - 중앙지원(국고 + 용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해당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사고”
 - 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축사의 붕괴, 가축의 도난·폐사 등
 - ※ 기타 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금액 : 호당 300만원~1억원이내
 - ※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액
 - 자연재해 : 피해액과 정부지원액(보조 + 용자)의 차액 범위내
 - 기타사고 : 보험금·공제금 및 정부지원액(살처분보상비 등)을 제외한 피해액의 50% 범위내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법령에 의한 『재해』의 경우
 - 시장·군수는 피해농가로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피해를 집계하여 농림부에 자금지원 요청, 농림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의 피해복구계획에 의한 확정액과 피해액과의 차액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시·도 및 축협중앙회에 통지
 - 축협중앙회장 또는 시·도별 한도를 배정하여 축협조합을 통하여 대출 실행
- 기타 사고에 의한 경우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축협 도지회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 축협 도지회장은 중앙회장에 지원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도지회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4)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순으로 하되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7. 자금운용관리

- 축협중앙회는 배정된 한도범위내에서 사육규모, 축산농가수 등을 기준으로 시·도별, 조합별 자금배정 운용
- 시·도별, 조합별 가축사육규모 및 축산농가수의 변동추세를 감안 자금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

8. 사업신청안내

- 농림부 축산정책과(02-504-9431~3)
- 축협중앙회 여신지원부(02-2224-8677~8)
- 시·도 축산과, 축협 시·도지회
- 시·군 축산계, 시·군 축협조합
- 신청방법 : 농가 또는 단지·법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축협에 신청

9.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제한대상
 - 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
 -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중단자로 확인된 자(비양축가 또는 법인)
 - 중앙회 임직원, 조합장 및 조합의 상근임직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기타 이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의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10. 기타사항(행정사항)

- 사후관리
 - 축산경영자금 운용요령에 의해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농림부)
 - 목적외 사용여부 등을 수시확인하고, 정책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축협중앙회, 축협조합)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축협조합이나 축협 시·도지회의 협조요청에 즉시 응하여 기관간 협의지연으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 축협중앙회장은 세부집행계획 및 융자 실행결과 등을 농림부에 보고
- 본 요령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관련 현행법령 및 고시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축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